

투자위험등급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p>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은 이 투자회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p>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마이다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다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마이다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회사,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 02-3787-3500)
4.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성 기준일 : 2016년 7월 26일
6. 일괄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6년 7월 30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회사 주권(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추가형 증권투자 회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추가형(개방형) 증권투자 회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9. 존속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http://www.midasasset.com>
 - 각 판매회사, 협회 → <http://www.kofia.or.kr>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 가능합니다.**
9. 폐쇄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동성 제공을 위해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환금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1. 외국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기재가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2.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3.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약정보 >

(작성기준일 : 2016.7.26)

마이더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 (펀드코드 : 34270)

투자위험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마이더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주)은 이 투자회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회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	---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회사는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여 주가하락 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추가수익을 추구하여 그 수익을 회사의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투자회사, 증권(주식형), 추가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종류형					
집합투자업자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주) (02-3787-350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9,999조 주			
효력발생일	2016년 7월 30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midasse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A1	Ae	C1	Ce	C-W	
가입자격	제한없음	온라인가입	제한없음	온라인가입	Wrap 계좌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선취)	납입금액의 0.5% (선취)	-	-	-	
환매수수료	없음		90일 미만인 경우: 이익금의 70%			
보수 (연, %)	판매	0.5000	0.2500	1.5000	0.9000	0.0000
	운용 등	운용보수 : 0.6500 신탁보수 : 0.0300 사무관리 0.0600				
	기타	0.0030	0.0000	0.0000	0.0000	0.0020
	총보수비용	1.2430	0.9900	2.2400	1.6400	0.7400
※ 주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 C2, C3, C4, C5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는 매3개월 후급으로 지급됩니다. · 기타비용은 이 투자회사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서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시30분 이 전: 제2영업일 기준가 · 15시30분 경과후: 제3영업일 기준가 	환매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시30분 이 전: 제2영업일 기준가 제4영업일 지급 · 15시30분 경과후: 제3영업일 기준가 제4영업일 지급 			
기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을 직전일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1,000주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공시방법: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midasset.com),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회사는 자산의 60% 이상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을 얻는 것을 운용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전략을 활용하여 주가하락 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추가수익을 추구하여 그 수익을 회사의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해 회사는 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투자전략

가. 기본 운용전략

1) 회사는 회사의 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식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채권 등에 자산총액의 40% 이하를 투자하며, 각 부분의 운용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식 투자전략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자본이득추구를 기본전략으로 하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주권상장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포함)에 투자합니다. 주식투자자 관련하여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매매거래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나) 채권 투자전략

회사는 자산을 다음과 같은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채권 투자에 따르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1) 국공채, 지방채, 특수채

2)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사모사채 제외)

다) 파생상품 투자전략

현물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행사가격이 현재주가수준보다 높은 행사가격의 콜옵션을 지속적으로 매도하여 콜옵션 프리미엄을 꾸준히 확보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여 주가하락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송형섭	1974	책임 운용역	2	11억	-서울대 경영대학원 -01.05월~05.04월 랜드마크자산운용 -05.08월~06.04월 유리스투자자문 -06.04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종류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Class A1		(15.05.01~16.04.30)	(14.05.01~15.04.30)	(13.05.01~14.04.30)	(12.05.01~13.04.30)	(11.05.01~12.04.30)
	집합투자기구	-9.01	10.25	-5.99	0.44	-15.42
	비교지수	-4.17	6.96	0.72	0.28	-5.87

주1) 이 투자회사는 운용전략 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비교지수로 적절한 벤치마크가 없습니다.

주2) 종류 A1(선취판매수수료 부과)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회사는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시장위험)	주식시장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그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개별기업 성과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게 되므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부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의 주식운용 전략으로 인한 위험	주식 투자시 주식시장 평균을 능가하는 투자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에 선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회사의 운용실적이 참고지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으로 인한 위험	이 투자회사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므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 또는 완만히 상승할 경우 커버드콜 전략을 통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주가가 단기 급등할 경우 투자회사의 수익률 상승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 해산위험	투자회사는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주주총회의 결의/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금융감독원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해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회사 설립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회사 설립후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회사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위험등급

이 투자회사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투자회사로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이 **13.30%**이므로 아래 위험등급 기준에 따라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회사는 주식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을 이해하며,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추후 매결산시마다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 기준표>

등급	1(매우높은위험)	2(높은위험)	3(다소높은위험)	4(보통위험)	5(낮은위험)	6(매우낮은위험)
수익률 변동성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수익률 변동성: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실제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

(3) 위험관리

이 투자회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회사로 주식 및 관련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개별 주식,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 종목 투자한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회사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1)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회사 단계에서의 과세와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회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회사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2) 주주에 대한 과세 및 과세율

<개인주주에 대한 과세>

1) 배당소득세

- 개방형 투자회사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투자회사 주식을 환매할 경우, 환매 시 이익은 장외주식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배당소득의 과세표준에는 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상장 주식,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의 양도차익과 주가지수선물·옵션의 매매·평가 차익은 제외되며, 보유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보유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보유채권의 양도차익 등은 포함됩니다.
-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2)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개인투자자의 당해년도 이자 및 배당소득(투자회사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포함)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당해 개인투자자는 종합소득신고의 의무를 지게 되나, 당해년도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투자회사의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주주에 대한 과세>

- 법인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동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법인주주는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되고 배당세액공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및 과세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1) 종류간 전환 절차

이 투자회사는 주주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주식의 보유기간(당해 주식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주식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주식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주주가 최초로 매입하는 주식은 종류 C1 주식에 한합니다.

1. C1종류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2종류 주식으로 전환
2. C2종류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3종류 주식으로 전환
3. C3종류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4종류 주식으로 전환
4. C4종류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5종류 주식으로 전환

※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상기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며,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 주주의 (일부)환매청구에 따라 해당 주식의 (일부)환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환하지 아니하고, 당해 (일부)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재무정보

※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마이더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 (34270)

종류(클래스)	종류A1	종류Ae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Ce	종류C-W
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71281	AS860	71331	28690	28691	28692	28693	AS898	8266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회사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주식형)

다. 개방형 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회사는 추가형 증권투자회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집(판매)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계속 모집(판매) 가능합니다.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2)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마이다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 (34270)

종류(클래스)	종류A1	종류Ae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Ce	종류C-W
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71281	AS860	71331	28690	28691	28692	28693	AS898	8266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02-03-18	회사 설립
2002-04-19	운용 개시일
2002-05-28	운용보수 인하
2004-06-2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적용
2005-06-07	Late trading 적용
2007-07-09	A1, C1 클래스 신설
2008-05-06	C-W 클래스 신설
2008-06-12	운용대상에 주식선물, 투자증권 차입 추가
2008-10-21	장기적립식주식형 세제혜택 적용 관련
2009-05-03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마이다스 커버드콜 주식형 투자회사 ⇒ 마이다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
2010-05-03	판매회사 보수율 변경
2010-10-25	판매회사 보수율 변경
2014-06-03	Ae, Ce 클래스 신설
2014-06-18	감독이사 임기 변경
2015-05-04	‘간주의결권 행사’ 관련 정관 변경
2015-11-02	부책임용역 삭제
2015-11-24	신규 감독이사 선임
2016-05-16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하나펀드서비스)

3.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1)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저축만기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 상 일정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5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	----------------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KTB 빌딩 8층 (대표전화 : 02-3787-3500)
----------	--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①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송형섭	1974	책임 운용역	2	11 억	-서울대 경영대학원 -01.05월~05.04월 랜드마크자산운용 -05.08월~06.04월 유리스투자자문 -06.04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f.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역	직위	운용 기간
허필석	책임운용역	2008.01.22~2015.07.22
송형섭	책임운용역	2015.07.23~현재
송형섭	부책임운용역	2012.05.02~2015.07.22
김민경	부책임운용역	2015.07.23~2015.11.01

주1) 2016.04.30.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투자회사,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마이다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								
종류 A1	종류 Ae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W
제한없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제한없음	C1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2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3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4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WRAP 계좌보유 고객 및 특정금전신탁고객 전용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회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회사로서 이 집합투자회사가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		보수			
		판매	환매	판매 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 회사
A1 (펀드코드: 71281),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1%	없음	연 0.50%	연 0.65%	연 0.03%	연 0.06%
Ae (펀드코드: AS860)	온라인 가입	납입금액의 0.5%	없음	연 0.50%	연 0.65%	연 0.03%	연 0.06%
C1 (펀드코드: 71331)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음	없음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연 1.50%	연 0.65%	연 0.03%	연 0.06%
C2 (펀드코드: 28690)	C1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없음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연 1.375%	연 0.65%	연 0.03%	연 0.06%
C3 (펀드코드: 28691)	C2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없음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연 1.250%	연 0.65%	연 0.03%	연 0.06%
C4 (펀드코드: 28692)	C3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없음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연 1.125%	연 0.65%	연 0.03%	연 0.06%
C5 (펀드코드: 28693)	C4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없음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연 1.000%	연 0.65%	연 0.03%	연 0.06%
Ce (펀드코드: AS898)	온라인 가입	없음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연 0.90%	연 0.65%	연 0.03%	연 0.06%
C-W (펀드코드: 82661)	WRAP 계좌보유고객 및 특정금전 신탁고객 전용, 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음	없음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연 0.00%	연 0.65%	연 0.03%	연 0.06%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회사는 **자산의 60% 이상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을 얻는 것을 운용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전략을 활용하여 추가하락 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추가수익을 추구하여 그 수익을 회사의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해 회사는 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지분증권	60% 이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국내 주식	60% 이상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채권	40% 이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제외함)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 신용등급이 A-이상인 것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및 국내에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
주식및채권 관련장내파 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회사 자산총 액의 15% 이하(헤지 또는 헤지 이외 목적)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식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수익증권 등	5% 이하(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의 경우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증권의 대여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회사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에 대한 대여

환매조건부 매도	보유 채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 매도란 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의 차입	20% 이하	상기의 지분증권, 국내주식, 채권, 어음, 자산유동화증권의 차입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의 거래		법 시행령 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에 한함
기타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 매수	

※ 상기 투자대상별 투자한도는 다음의 경우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

- 1) 지분증권, 국내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대한 투자 한도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투자신탁 회계기간/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시 15일간
 -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15일간
- 2) 수익증권 등,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증권에 대한 대여,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에 대한 차입에 대한 투자한도
 -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3개월까지 투자한도 적용 유예
 -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 적용 유예

나. 투자제한

(1) 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10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 국채증권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매매,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매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로 부터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	최초설정일 로 부터1개월간

	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과 파생상품을 제외한 회사재산 평가액을 합한 금액인 총위험평가액이 자산 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주식	법 시행령 제 86 조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 189 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86 조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 시행령 제 86 조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집합투자자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대상 자산의 주식의 가격변동, 투자자의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이해관계인과의 거래, 계열회사 발행 주식 및 후순위채권 투자제한 제외).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회사는 회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식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채권 등에 자산총액의 40% 이하를 투자하며**, 각 부문의 운용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식 투자전략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자본이득추구를 기본전략으로 하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주권상장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포함)에 투자합니다. 주식투자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매매거래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나) 채권 투자전략

회사는 자산을 다음과 같은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채권 투자에 따르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 1) 국공채, 지방채, 특수채
- 2)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사모사채 제외)

다) 파생상품 투자전략

현물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행사가격이 현재주가수준보다 높은 행사가격의 콜옵션을 지속적으로 매도하여 콜옵션 프리미엄을 꾸준히 확보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여 주가하락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 커버드콜 투자전략

현물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행사가격이 현재주가수준보다 높은 행사가격의 콜옵션을 지속적으로 매도하여 콜옵션프리미엄을 꾸준히 확보하는 전략을 말하며, 동전략 실행시 주가추이에 따른 수익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주가 급등시: 현물 주식 보유 부분에서 큰폭의 수익이 발생하나 콜옵션 매도 부분의 손실로 인하여 수익률 상승이 일정수준으로 제한됨
- ▶ 주가가 완만히 상승하거나 횡보할 경우: 주가상승으로 인한 수익 이외에 콜옵션 매도시 얻는 옵션프리미엄 상당액만큼의 수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음
- ▶ 주가 하락시: 콜옵션 프리미엄 수입으로 현물 주식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부분적인 방어가 가능함

2) 이 투자회사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운용전략 상 특징으로 인하여 비교지수로 적절한 벤치마크가 없으므로 투자판단 시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투자회사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회사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 투자회사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위험관리: 이 투자회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회사로 주식 및 관련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개별 주식,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 종목 투자한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수익 구조: 이 투자회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회사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 등락이 투자 손익을 결정하는 주요인입니다. 즉,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며,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 투자회사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므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 또는 완만히 상승할 경우 커버드콜 전략을 통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주가가 단기 급등할 경우 투자회사의 수익률 상승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투자대상 주식으로부터의 배당 수익, 채권 및 유동성자산 투자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도 투자회사 수익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회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투자회사 주식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p>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시장위험)</p>	<p>주식시장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그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개별기업 성과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게 되므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부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p>
<p>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종목위험)</p>	<p>개별주식은 해당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되므로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기업의 가치보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만, 회사의 판단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투자손실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p>
<p>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p>	<p>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초 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헷지전략과 자산배분전략을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하게 움직일 경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p>
<p>금리변동위험</p>	<p>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수령 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p>
<p>신용위험</p>	<p>채무불이행 위험은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회수완료 시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됨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다</p>

나. 특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p>투자회사의 주식운용 전략으로 인한 위험</p>	<p>주식 투자시 주식시장 평균을 능가하는 투자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에 선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회사의 운용실적이 참고지수와 차이가 날 수 있음</p>

	니다.
커버드콜 전략으로 인한 위험	이 투자회사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므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 또는 완만히 상승할 경우 커버드콜 전략을 통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주가가 단기 급등할 경우 투자회사의 수익률 상승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재산의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회사자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자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u>이 투자회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u>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이 투자회사의 주식은 주주가 환매를 청구하는 시점과 환매대금이 확정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시장상황 변동으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이 투자자가 환매청구시점에 예상한 순자산가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보유자산의 현저한 거래부진이나 천재지변, 증권시장의 폐쇄, 휴장, 거래정지, 부도, 대량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환매에 응할 수 없을 경우 환매가 연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 해산위험	투자회사는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주주총회의 결의/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금융감독원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해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회사 설립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회사 설립후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회사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회사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투자회사로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이 13.30%이므로 아래 위험등급 기준에 따라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회사는 주식투자자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을 이해하며,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추후 매결산시마다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 기준표>

등급	1(매우높은위험)	2(높은위험)	3(다소높은위험)	4(보통위험)	5(낮은위험)	6(매우낮은위험)
수익률 변동성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수익률 변동성: 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실제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회사 주식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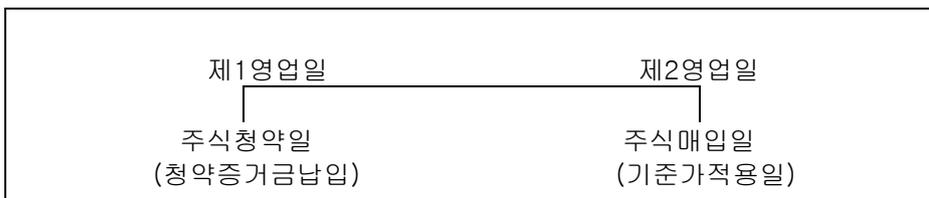
< 주식의 종류 및 판매기준 >

구 분	종류A1	종류Ae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Ce	종류C-W
선취 판매 수수료	납입금액 의 1%	납입금액 의 0.5%	-	-	-	-	-	-	-
판매 보수	연 0.500%	연 0.250%	연1.500%	연1.375%	연1.250%	연1.125%	연1.000%	연 0.900%	연 0.000%
가입 조건	제한 없음	온라인 가입	제한 없음	C1 클래스 수익증권 의 보유기 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2 클래스 수익증권 의 보유기 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3 클래스 수익증권 의 보유기 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4 클래스 수익증권 의 보유기 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온라인 가입	WRAP계 좌보유고 객 및 특정금전 신탁고객 전용

2) 매수청약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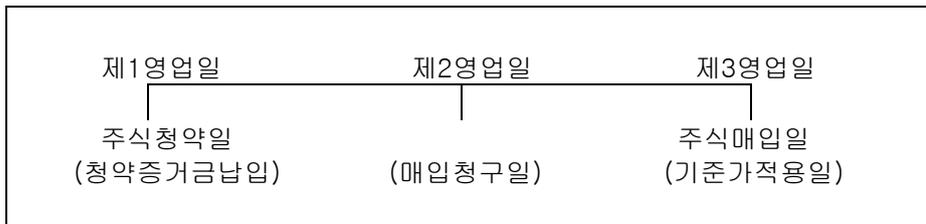
가.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에 청약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로 청약금에 상당하는 주식이 입고되고, 청약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계좌로 환불됨



나.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청약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로 청약금에 상당하는 주식이 입고되고, 청약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계좌로 환불됨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다만, 토요일은 제외)을 말합니다.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매입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매입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 단, 이 투자회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회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마켓타이밍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마켓타이밍 또는 이와 관련된 과도한 매매, 단기매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켓타이밍은 투자회사의 순자산가치의 산정방법의 불완전성, 결함 또는 시차를 이용하는 동일한 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단기간의 매입, 환매행위를 의미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주주간 이익의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거나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주주의 주식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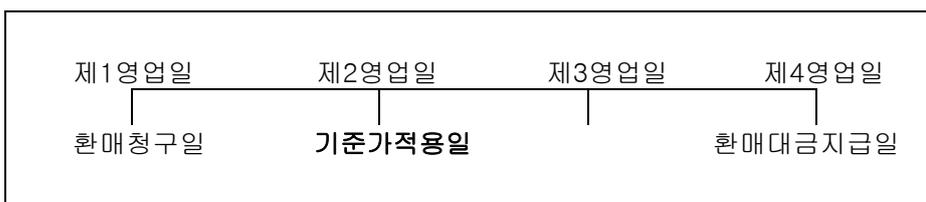
1) 환매방법

회사의 주식은 언제라도 환매가 가능하며 주주가 주식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판매회사에서 이 투자회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회사와 자산운용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를 말한다.)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국민은행**을 말한다.)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D+3)**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주주에게 환매대금을 지급



나.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D+3)**에 판매회사를 경유하

여 주주에게 환매대금을 지급



※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환매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구 분	종류 A1, Ae	종류 C1, C2, C3, C4, C5, Ce, C-W
환매수수료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주) 단 재투자주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회사 주식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5) 일부환매의 청구

주주는 보유한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주식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주식을 환매하고,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새로운 주식을 교부합니다. 단, 환매청구 등의 사유로 보유주식의 수가 1만주 미만이 되는 경우 주주는 그 1만주 미만의 잔여주식에 대하여도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6) 환매제한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해산한 경우
- ③ 회사의 순자산액이 10억에 미달하는 경우
- ④ 결산일 전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 ⑤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환매연기

- ① 주식의 환매를 요구 받은 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주식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주주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주주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 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으로 회사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주의 이익 또는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회사 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주주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신탁업자, 회사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주식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② 주식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 가)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나)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 재개 시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다)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 ③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회사 주식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⑤ 주주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주주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주주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환매가격
 - 다)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가격,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라)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⑥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주주 및 판매 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환매연기 주주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 환매연기 주주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경우 회사는 환매연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①, ⑤ 및 ⑥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합니다.

8) 주식의 일부환매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회사 주식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회사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는 이 회사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따라 별도의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회사에 대하여는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당해 종류 주식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9) 빈번한 환매와 관련한 유의사항

이 투자회사는 종류A1의 경우 가입시에 정액의 선취 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종류C1,C-W의 경우 가입 후 조기 환매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이 투자회사 주권을 지나치게 빈번하게 환매할 경우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1) 종류간 전환 절차

이 투자회사는 주주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주식의 보유기간(당해 주식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주식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주식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주주가 최초로 매입하는 주식은 종류 C1 주식에 한합니다.

1. C1종류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2종류 주식으로 전환
2. C2종류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3종류 주식으로 전환
3. C3종류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4종류 주식으로 전환
4. C4종류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5종류 주식으로 전환

※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상기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며,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 주주의 (일부)환매청구에 따라 해당 주식의 (일부)환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환하지 아니하고, 당해 (일부)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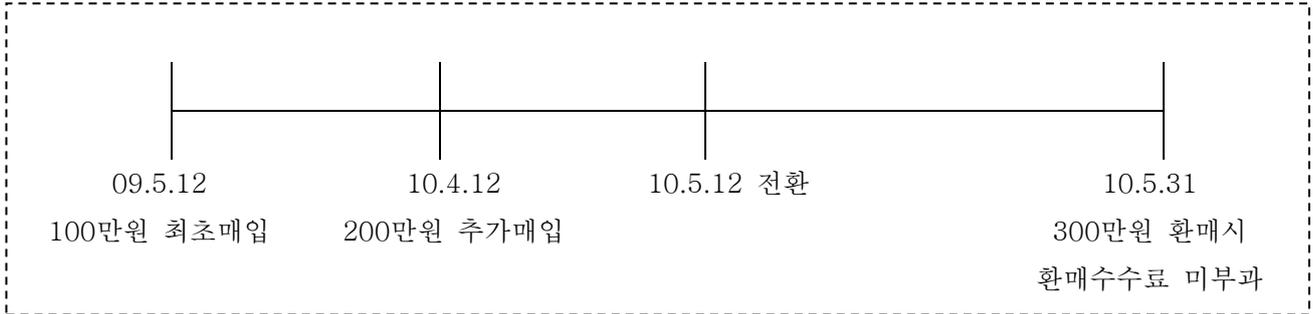
(2) 투자회사의 전환특례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종류C1, C2, C3, C4 주식의 전환을 위하여 각각 자동으로 환매청구 되는 경우

2. 주식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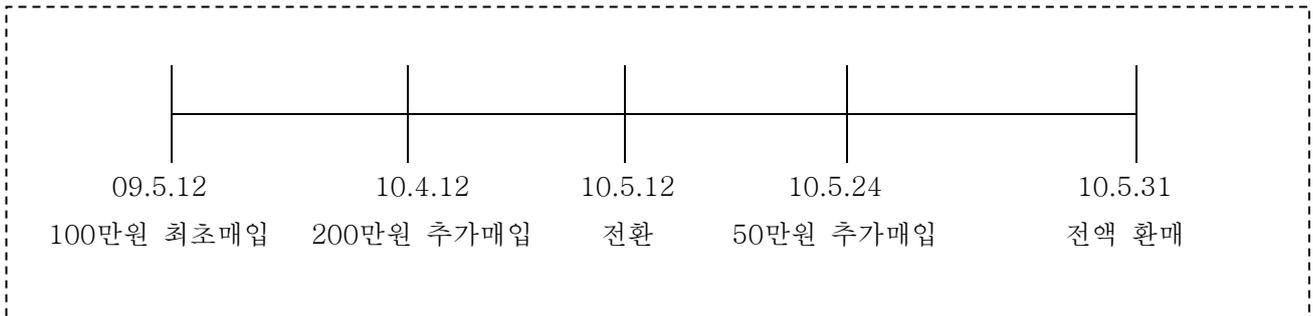
주1) 예시



*환매수수료 부과 기준이 '90일 미만 투자' 이므로 2010년 4월 12일에 투자한 200만원은 2010년 5월 31일에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환매수수료 부과대상이나 이에 대한 환매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다만, 주식의 전환 후 추가 납입이 발생하였고, 이 추가 납입분에 대하여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환매수수료 부과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시)



* 09.12.30 전액 환매 시 전환 전 투자금액 300만원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전환 후 투자분(50만원)은 환매수수료 부과기간(9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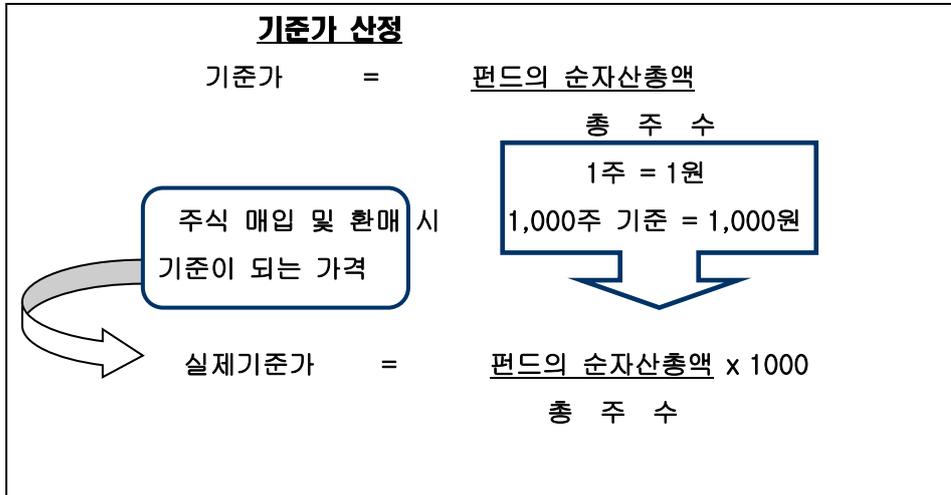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공고일의 기준가격(당해 종류주식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가치(당해 종류 주식의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공고일 전일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1,000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

	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의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 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회사 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⑧ 비상장 외화표시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회사는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투자회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회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종류 A1	종류 Ae	종류 C1, C2, C3, C4, C5, Ce, C-W	
선취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	납입금액의 0.5%	-	매입 시
환매수수료	-		90일 이내 : 이익금의 70%	환매 시 1회

주) 종류 A1은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고 환매수수료의 기간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단위:연간,%)

구분	지급비율									
	종류 A1	종류 Ae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W	
수익자의 자격	제한 없음	온라인 가입	제한 없음	종류 C1 수익증권 보유기간 1년 이상	종류 C2 수익증권 보유기간 1년 이상	종류 C3 수익증권 보유기간 1년 이상	종류 C4 수익증권 보유기간 1년 이상	온라인 가입	WRAP 계좌보유고객 및 특정금전신탁고객 전용	지급 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65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500	0.250	1.500	1.375	1.250	1.125	1.000	0.900	0.000	
신탁업자 보수	0.03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60									

기타비용	0.003	0.000	0.000	0.000	0.000	0.001	0.003	0.000	0.000	수시 발생
총 보수, 비용	1.243	0.990	2.240	2.115	1.990	1.866	1.743	1.640	0.740	
증권거래 비용	0.215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회사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서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수수료와 콜수수료 금액(제세공과금 포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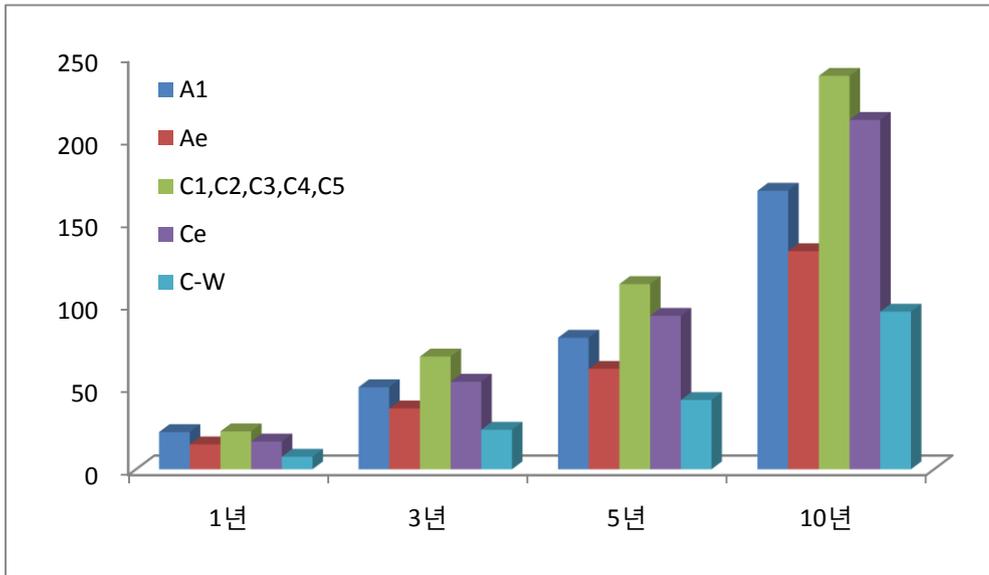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투자회사보수의 투자기간별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예시 (누적)

(단위 : 만원)

투자기간	1년	3년 경과	5년 경과	10년 경과
종류 A1	22.52	49.67	79.60	168.57
종류 Ae	15.07	36.81	60.77	131.97
종류 C1,C2,C3,C4,C5	22.96	68.22	112.09	238.09
종류 Ce	16.81	52.99	92.89	211.43
종류 C-W	7.59	23.91	41.91	95.40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증권거래비용은 제외)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종류 A1과 C1~C5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1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투자회사는 투자회사자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주식의 이익금을 투자회사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1) 이익분배

- 가) 회사는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분배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 결산 분배금 지급의 경우에는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그 소유 또는 질권 등록된 주식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다) 회사가 이익금 전액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라) 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동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이사회에서 정한 일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급일은 이사회 의결일부터 1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배금은 순자산가치에서 최저순자산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로 합니다.

2) 분배금 등의 소멸시효

- 가) 회사의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결산분배금 및 청산분배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회사 단계에서의 과세와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회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회사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

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각 결산기 사업소득 중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투자회사의 경우 환매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거래소시장을 통하여 투자했던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입니다.

주)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

-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모 최소투자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단, 소수투자자가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95% 이상 소유시 면제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의 기금만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

(2) 주주에 대한 과세 및 과세율

<개인주주에 대한 과세>

1) 배당소득세

- 개방형 투자회사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투자회사 주식을 환매할 경우, 환매 시 이익은 장외주식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배당소득의 과세표준에는 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상장 주식,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의 양도차익과 주가지수선물·옵션의 매매·평가 차익은 제외되며, 보유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보유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보유채권의 양도차익 등은 포함됩니다.
-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2)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개인투자자의 당해년도 이자 및 배당소득(투자회사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포함)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당해 개인투자자는 종합소득신고의 의무를 지게 되나, 당해년도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투자회사의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주주에 대한 과세>

- 법인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동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법인주주는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되고 배당세액공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15. 발기인·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발기인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주식수	결격요건 해당여부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116-81-71681	100,000,000주	해당사항 없음

나.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감독이사	생년월일	주요경력	결격요건 해당여부
남익현	1963년 3월 7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Stanford University 산업공학/경영학 박사 현)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해당사항 없음
김형진	1962년 7월 15일	서울대학교 경영대 졸업 미국 UCLA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미국 IIT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현)법무법인 정세 소속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KAIST 겸직교수	해당사항 없음

다. 감독이사의 보수지급기준

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감독이사에게 보수지급에 관한 승인을 받음

- 보수 : 매월 20만원
- 퇴직금 : 없음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회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반기재무제표를 제외한 아래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각각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대차대조표 (단위:원)			
항목	제 14 기	제13기	제12기
	2016-03-17	2015-03-17	2014-03-17
운용자산	9,315,596,247	14,669,817,939	25,066,658,609
증권	8,910,999,680	14,024,955,020	23,742,087,980
파생상품	-1,305,000	-37,905,000	22,635,000
부동산/실물자산			
현금 및 예치금	405,901,567	329,839,919	124,321,729
기타 운용자산		352,928,000	1,177,613,900
기타자산	183,636,178	225,972,672	528,407,659
자산총계	9,499,232,425	14,895,790,611	25,595,066,268
운용부채	15,920,000	9,695,000	23,835,000
기타부채	29,496,162	33,802,792	400,415,531
부채총계	45,416,162	43,497,792	424,250,531
원본	5,382,539,273	8,222,114,938	14,809,196,814
수익조정금			
이익잉여금	4,071,276,990	6,630,177,881	10,361,618,923
자본총계	9,453,816,263	14,852,292,819	25,170,815,737
손익계산서 (단위:원)			
항목	제 14 기	제13기	제12기
	2015-03-18~ 2016-03-17	2014-03-18~ 2015-03-17	2013-03-18~ 2014-03-17
운용수익	17,789,842	1,514,418,680	-1,280,791,839
이자수익	1,433,599	17,269,996	41,029,255
배당수익	133,073,101	139,595,937	322,436,251
매매/평가차익(손)	-117,497,795	1,357,298,780	-1,644,733,485
기타 수익	780,937	253,967	476,140
운용비용	51,690,340	136,896,288	215,508,937

관련회사 보수			
매매수수료	307,316	1,003,160	4,891,670
기타 비용	51,383,024	135,893,128	210,617,267
당기순이익	-33,900,498	1,377,522,392	-1,496,300,776
매매회전율(%)	128	249	211

나. 대차대조표

(단위:원)

항목	제 14 기	제13기	제12기
	2016-03-17	2015-03-17	2014-03-17
자 산			
I. 운 용 자 산	9,315,596,247	14,669,817,939	25,066,658,609
1. 현금 및 예치금	405,901,567	329,839,919	124,321,729
예 치 금	405,901,567	13,640,479	124,321,729
증 거 금		316,199,440	
2. 대 출 채 권		300,000,000	1,000,000,000
콜 론			1,000,000,000
R P 매 수		300,000,000	
매 입 어 음			
대 출 금			
3. 유 가 증 권	8,910,999,680	14,024,955,020	23,742,087,980
지 분 증 권	8,910,999,680	14,024,955,020	23,742,087,980
채 무 증 권			
수 익 증 권			
기타 유가증권			
4. 파 생 상 품	-1,305,000	-37,905,000	22,635,000
파 생 상 품	-1,305,000	-37,905,000	22,635,000
5. 부동산 및 실물자산			
부 동 산			
실 물 자 산			
6. 기타 운용자산		52,928,000	177,613,900
기타 운용자산		52,928,000	177,613,900
II.기 타 자 산	183,636,178	225,972,672	528,407,659
1. 매도가능증권미수금	54,538,570	79,313,301	257,925,768
2. 정 산 미 수 금			
3. 미 수 이 자	124,172	72,342	113,916
4. 미 수 배 당 금	128,973,436	146,190,619	268,940,465
5. 기 타 미 수 금		396,410	1,427,510

6. 외화환산손익조정			
7. 파생상품평가손익조정			
자 산 총 계	9,499,232,425	14,895,790,611	25,595,066,268
부 채			
I. 운 용 부 채	15,920,000	9,695,000	23,835,000
1. 파 생 상 품	15,920,000	9,695,000	23,835,000
2. R P 매 도			
3. 기타 운용부채			
II.기 타 부 채	29,496,162	33,802,792	400,415,531
1. 매도가능증권미지급금	28,933,900	14,569,550	326,132,600
2. 정 산 미 지 급 금			
3. 해 지 미 지 급 금		18,667,020	73,704,429
4. 수 수 료 미 지 급 금	562,262	566,222	578,502
5. 미지급 이익분배금			
6. 기 타 미 지 급 금			
부 채 총 계	45,416,162	43,497,792	424,250,531
자 본			
I. 원 본	5,382,539,273	8,222,114,938	14,809,196,814
II. 이 익 잉 여 금	4,071,276,990	6,630,177,881	10,361,618,923
자 본 총 계	9,453,816,263	14,852,292,819	25,170,815,73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499,232,425	14,895,790,611	25,595,066,268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항목	제 14 기	제13기	제12기
	2015-03-18~ 2016-03-17	2014-03-18~ 2015-03-17	2013-03-18~ 2014-03-17
I. 운 용 수 익	17,789,842	1,514,418,680	-1,280,791,839
1. 투 자 수 익	135,287,637	157,119,900	363,941,646
이 자 수 익	1,433,599	17,269,996	41,029,255
배 당 금 수 익	133,073,101	139,595,937	322,436,251
수 수 료 수 익	79,872	61,477	145,890
기타 투자수익	701,065	192,490	330,250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206,810,758	3,757,009,196	3,663,408,922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1,071,560,758	3,648,925,086	3,135,063,71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135,250,000	107,855,000	527,085,000
외환거래/평가차익			
기 타 이 익		229,110	1,260,21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324,308,553	2,399,710,416	5,308,142,407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1,322,836,253	2,274,255,416	4,544,647,407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손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1,305,000	125,455,000	763,495,000
외환거래/평가차손			
기 타 차 손	167,300		
II. 운 용 비 용	51,690,340	136,896,288	215,508,937
1. 운 용 수 수 료			
2. 판 매 수 수 료			
3. 수 탁 수 수 료			
4. 지 급 수 수 료	307,316	1,003,160	4,891,670
5. 기 타 비 용	51,383,024	135,893,128	210,617,267
III. 당기순(손실)이익	-33,900,498	1,377,522,392	-1,496,300,776
1,000 좌당 순(손실)이익	-6	130	-7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마이다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								
2013-03-18~2014-03-17	239	424	13	22	104	180	148	250
2014-03-18~2015-03-17	148	250	5	8	71	124	82	148
2015-03-18~2016-03-17	82	148	2	4	31	57	54	95
마이다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A1								
2013-03-18~2014-03-17	435	404	11	10	176	160	270	236
2014-03-18~2015-03-17	270	236	5	4	122	110	153	141
2015-03-18~2016-03-17	153	141	4	3	55	52	102	90
마이다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C2								

2015-03-18~2016-03-17	0	0	0	0	0	0	0	0
마이더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C3								
2013-03-18~2014-03-17	4	3	1	1	4	4	1	0
2014-03-18~2015-03-17	1	0	0	0	1	1	0	0
2015-03-18~2016-03-17	0	0	0	0	0	0	0	0
마이더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C4								
2013-03-18~2014-03-17	6	5	4	4	8	7	2	2
2014-03-18~2015-03-17	2	2	1	1	3	2	0	0
2015-03-18~2016-03-17	0	0	0	0	0	0	0	0
마이더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C5								
2013-03-18~2014-03-17	9	8	6	6	4	3	12	10
2014-03-18~2015-03-17	12	10	3	2	7	6	7	6
2015-03-18~2016-03-17	7	6	1	1	3	3	5	4

주) 이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 2007년 7월 9일 종류형간접투자기구조로 전환이 되어, 종류형 간접투자기구조로 전환이 되기 전 주식은 전환 후 종류 A1 주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상기 설정 및 환매 내역 중 기간별 재투자로 인한 좌수 변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집합투자기구	기간	기간중 재투자	
		좌수	금액
마이더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	2013-03-18~2014-03-17	9,796	8,472
	2014-03-18~2015-03-17	2,371	2,000
	2015-03-18~2016-03-17	1,021	991
마이더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A1	2013-03-18~2014-03-17	2,164	1,983
	2014-03-18~2015-03-17	0	0
	2015-03-18~2016-03-17	1,021	991
마이더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C2	2015-03-18~2016-03-17	0	0
마이더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C3	2013-03-18~2014-03-17	0	0
	2014-03-18~2015-03-17	0	0
	2015-03-18~2016-03-17	0	0
마이더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C4	2013-03-18~2014-03-17	544	500
	2014-03-18~2015-03-17	0	0
	2015-03-18~2016-03-17	0	0
마이더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C5	2013-03-18~2014-03-17	7,088	5,989
	2014-03-18~2015-03-17	2,371	2,000
	2015-03-18~2016-03-17	0	0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가. 출자지분의 총수

(2016년 4월 30일 기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한 주식의 총수	미발행주식의 총수
9,999조	5,254,850,807주	9,998조 994,745,149,193주

나. 발행한 출자지분의 내용

(2016년 4월 30일 기준)

구분	종류	발행주식수	발행가액 총액	비고
투자회사 주식	무액면, 기명식	5,254,850,807주	5,254,850,807원	-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회사의 전체적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집합투자기구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마이더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		(15.05.01~ 16.04.30)	(14.05.01~ 16.04.30)	(13.05.01~ 16.04.30)	(11.05.01~ 16.04.30)	(02.04.19~ 16.04.30)
	집합투자기구	-7.86	1.42	-0.7	-3.13	9.43
	비교지수	-4.17	1.24	1.07	-0.52	5.52
마이더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A1		(15.05.01~ 16.04.30)	(14.05.01~ 16.04.30)	(13.05.01~ 16.04.30)	(11.05.01~ 16.04.30)	(07.07.06~ 16.04.30)
	집합투자기구	-9.01	0.16	-1.93	-4.34	2.09
	비교지수	-4.17	1.24	1.07	-0.52	1.89
마이더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C2		(15.07.17~ 16.04.30)	(..~ ..)	(..~ ..)	(..~ ..)	(15.07.17~ 16.04.30)
	집합투자기구	-25.01				-25.01
	비교지수	-3.69				-3.69
마이더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C3		(15.05.01~ 16.04.30)	(14.05.01~ 16.04.30)	(13.05.01~ 16.04.30)	(11.05.01~ 16.04.30)	(10.10.25~ 16.04.30)
	집합투자기구	-9.3	-0.37	-2.53	-4.98	-1.22
	비교지수	-4.17	1.24	1.07	-0.52	1.6

마이더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C4		(15.05.01~ 16.04.30)	(14.05.01~ 16.04.30)	(13.05.01~ 16.04.30)	(11.05.01~ 16.04.30)	(10.10.25~ 16.04.30)
	집합투자기구	-9.54	-0.44	-2.54	-4.93	-1.17
	비교지수	-4.17	1.24	1.07	-0.52	1.6
마이더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C5		(15.05.01~ 16.04.30)	(14.05.01~ 16.04.30)	(13.05.01~ 16.04.30)	(11.07.13~ 16.04.30)	(11.07.13~ 16.04.30)
	집합투자기구	-9.48	-0.35	-2.43	-3.76	-3.76
	비교지수	-4.17	1.24	1.07	0.01	0.01

주1) 이 투자회사는 운용전략 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비교지수로 적절한 벤치마크가 없습니다.

주2) 이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거 2007년 7월 9일 종류형간접투자기구로 전환이 되어, 종류형간접투자기구로 전환이 되기 전 주식은 전환 후 종류 A1 주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추이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단위:%)

집합투자기구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마이더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		(15.05.01~ 16.04.30)	(14.05.01~ 15.04.30)	(13.05.01~ 14.04.30)	(12.05.01~ 13.04.30)	(11.05.01~ 12.04.30)
	집합투자기구	-7.86	11.62	-4.79	1.68	-14.32
	비교지수	-4.17	6.96	0.72	0.28	-5.87
마이더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A1		(15.05.01~ 16.04.30)	(14.05.01~ 15.04.30)	(13.05.01~ 14.04.30)	(12.05.01~ 13.04.30)	(11.05.01~ 12.04.30)
	집합투자기구	-9.01	10.25	-5.99	0.44	-15.42
	비교지수	-4.17	6.96	0.72	0.28	-5.87
마이더스 커버드콜 증권 투		(15.07.17~	(..~	(..~	(..~	(..~

자회사(주식)C2		16.04.30)	..)	..)	..)	..)
	집합투자기구	-20.38				
	비교지수	-2.93				
마이다스 커버드콜 증권 투 자회사(주식)C3		(15.05.01~ 16.04.30)	(14.05.01~ 15.04.30)	(13.05.01~ 14.04.30)	(12.05.01~ 13.04.30)	(11.05.01~ 12.04.30)
	집합투자기구	-9.3	9.44	-6.7	-0.3	-16.09
	비교지수	-4.17	6.96	0.72	0.28	-5.87
마이다스 커버드콜 증권 투 자회사(주식)C4		(15.05.01~ 16.04.30)	(14.05.01~ 15.04.30)	(13.05.01~ 14.04.30)	(12.05.01~ 13.04.30)	(11.05.01~ 12.04.30)
	집합투자기구	-9.54	9.57	-6.59	-0.18	-15.98
	비교지수	-4.17	6.96	0.72	0.28	-5.87
마이다스 커버드콜 증권 투 자회사(주식)C5		(15.05.01~ 16.04.30)	(14.05.01~ 15.04.30)	(13.05.01~ 14.04.30)	(12.05.01~ 13.04.30)	(11.07.13~ 12.04.30)
	집합투자기구	-9.48	9.7	-6.47	-0.06	-10.41
	비교지수	-4.17	6.96	0.72	0.28	-3.36

주1) 이 투자회사는 운용전략 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비교지수로 적절한 벤치마크가 없습니다.

주2) 이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거 2007년 7월 9일 종류형간접투자기구로 전환이 되어, 종류형간접투자기구로 전환이 되기 전 주식은 전환 후 종류 A1 주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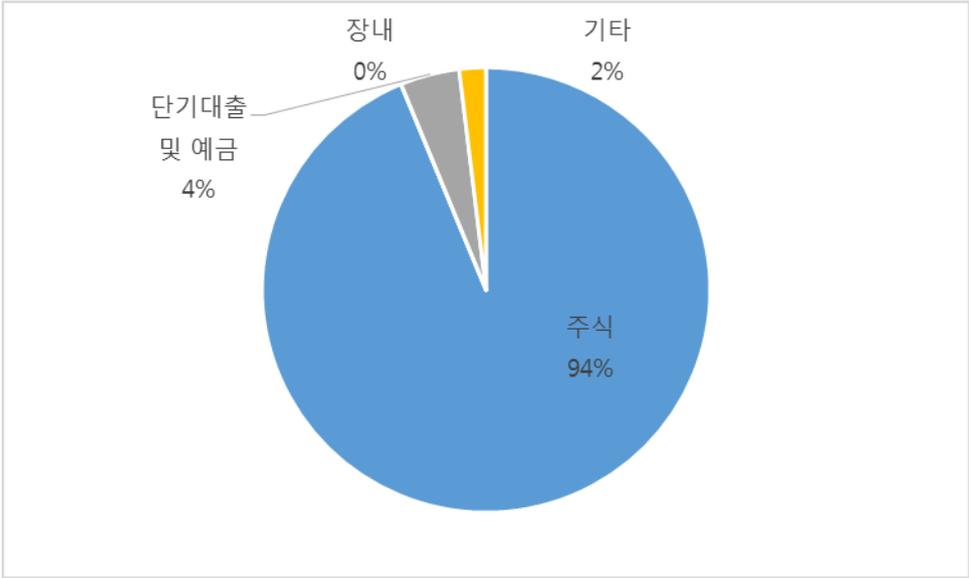
연도별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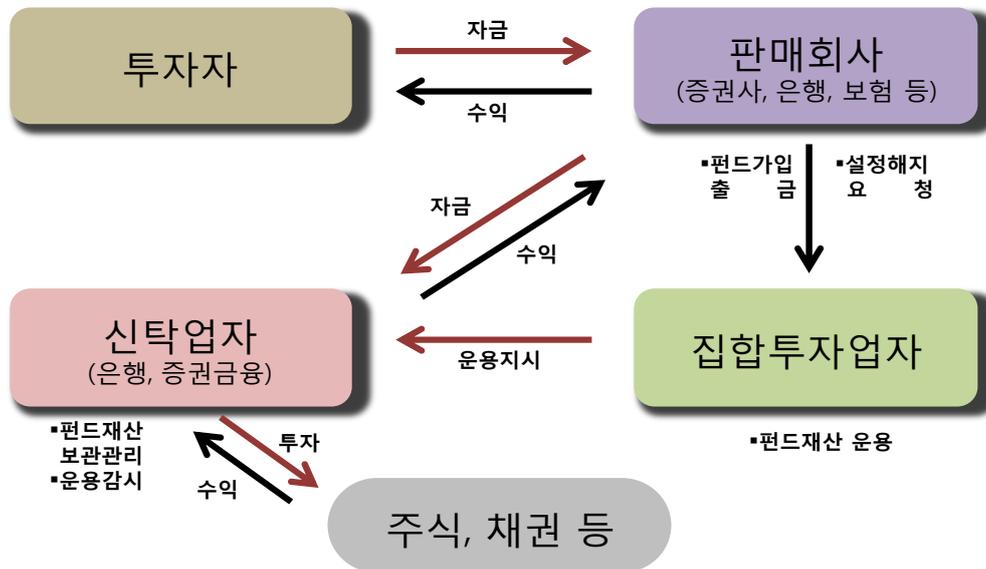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원화	8,911	0	0	0	-1	0	0	0	0	406	184	9,499
합계	8,911	0	0	0	-1	0	0	0	0	406	184	9,499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연락처 : 02-3787-3589, www.midasasset.com)
회사 연혁	1999.02.01 회사설립등기(납입자본금 70 억원) 1999.03.10 자산운용업 등록(금융감독위원회) 1999.07.07 상호변경: 마이다스자산운용(주)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2004.02.01 무상증자(납입자본금 100 억원)
자본금	100 억원
주요주주현황	현희현(10%), 이재관(10%) 등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15.3.31	'14.3.31	항 목	'15.3.31	'14.3.31
현금및예치금	516	424	영업수익	409	207
기타자산	409	301	영업비용	158	112
자산총계	925	725	영업이익	251	95
예수부채	23	11	영업외수익	0	0
기타부채	49	19	영업외비용	7	9
부채총계	72	3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44	95
자본금	100	100	법인세비용	54	19
잉여금	753	595	당기순이익	190	6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자본총계	853	695			

라. 운용자산 규모(2016.03.31 현재 / 억원, 순자산 기준)

집합투자 기구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 산	혼합자 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	재간접					
수탁고	9,967	6,891	5,513	873	334	4,190	-	1,731	-	29,499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나. 주요 업무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1.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주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신탁업자의 의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정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정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3.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5. 투자회사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신탁업자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2) 신탁업자의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사무관리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6층(다동, 한외빌딩) (02-6714-4600)

나. 주요 업무

-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3. 보수인출 등의 업무

(2) 일반사무회사의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회사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KIS 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연 락 처	☎ 02-399-3350	☎ 02-3215-1400	☎ 02-398-3900
홈 페이지	www.koreaap.com	www.bond.co.kr	www.nicepni.co.kr

나. 주요 업무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준칙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회사에게 제공합니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3.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투자증권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투자회사에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1) 주주총회의 구성

이 투자회사에는 전체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둡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주식 주주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주주총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소집을 요청 하여 법인이사가 소집하며,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 결의 가 있는 경우 기타 지역에서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이사회에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는 1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은 주식 1개마다 1개로 합니다.
-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주주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정관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 보호와 주주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3) 주주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

우를 제외한다)

- ③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 ④ 투자회사의 합병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 2제 1항으로 정하는 경우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⑤ 투자회사의 환매연기 발생시 후속 조치
- ⑥ 투자회사의 종류의 변경
- ⑦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
⑦의 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⑧ 개방형투자회사의 환매금지투자회사로의 변경
- ⑨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⑩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당해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투자자는 투자자총회의 의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그 주식을 매수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으며, 주식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을 투자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나. 잔여재산분배

- 이 투자회사의 주주는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결산분배금과 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에 따라 발생하는 청산분배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는 결산에 따른 결산분배금 또는 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에 따라 발생하는 청산분배금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 신탁업자가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 등을 지체 없이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산일 현재 회사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배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주주는 회사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투자회사투자자에 관련된 회사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투자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투자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회사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주주의 선택에 따라 주주의 주소지 또는 주주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주주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정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 ①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 ② 주주총회의 결의
- ③ 피흡수합병
- ④ 파산
- ⑤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⑥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 ⑦ 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상기와 같이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A.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 B.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 상호·사업자등록번호)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회사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현황과 투자회사 주식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회사 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주주가 이 투자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주주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②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봉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 ⑤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4)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

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정관변경에 관한 공시

투자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통한 주주에의 통지
-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그 외 정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 포 내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투자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광고를 하는 때에는 서울경제신문에 광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때에는 헤럴드경제신문에도 광고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midasasset.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게 하여야 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주주총회의 의결내용 /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 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 / 투자회사를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회사를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회사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시행령제93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가. 투자증권거래

구분	내용
주식	<p>1. 평가 항목 기업방문 및 당사 내방 설명회 주선 능력, 투자정보, 매매 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심사 항목별 평가 점수의 합계를 제한하여, 특정 평가자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합니다. 매매체결(속도 및 정확성) 능력의 경우 마이너스 점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p> <p>2. 선정 방법 포트폴리오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중개회사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담당자 전원이 매월 중개회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p> <p>3. 회사 경영관련 비용, 마케팅 비용,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등은 매매를 대가로 제공될 수 없는 서비스이며,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매매주문을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채권	<p>1. 평가방법 매분기 중개회사에 대해 선정된 항목에 따라 정성 평가하고,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중개회사의 순위 결정/ 각 중개회사별 점수를 기준으로 위탁 매매 배정</p> <p>2. 평가주체 : 채권운용역</p> <p>3. 평가항목 시장상황 및 호가의 정확성, 거래체결 빈도, Research 자료제공 여부, Back Office 업무처리 능력</p>

주1) 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평가 항목 및 선정 기준은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장내파생상품거래

구분	중개회사 선정기준
주식관련	<p>1. 평가 항목 기업방문 및 당사 내방 설명회 주선 능력, 투자정보, 매매 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심사 항목별 평가 점수의 합계를 제한하여, 특정 평가자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합니다. 매매체결(속도 및 정확성) 능력의 경우 마이너스 점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p> <p>2. 선정 방법 포트폴리오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중개회사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담당자 전원이 매월 중개회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p> <p>3. 회사 경영관련 비용, 마케팅 비용,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등은 매매</p>

	를 대가로 제공될 수 없는 서비스이며,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매매주문을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관련등	1. 평가방법 매분기 중개회사에 대해 선정된 항목에 따라 정성 평가하고,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중개회사의 순위 결정/ 각 중개회사별 점수를 기준으로 위탁 매매 배정 2. 평가주체 : 채권운용역 3. 평가항목 시장상황 및 호가의 정확성, 거래체결 빈도, Research 자료제공 여부, Back Office 업무 처리 능력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15. 발기인·감독이사에 관한 사항’의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참조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 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u>의결권</u> 의 3 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말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